

언론법상 책임있는 편집자라 하여
자동적으로 민사법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베를린 제국법정, 1990. 12. 23. 판결
-9V 4803/89 사건-

적용법조

독일민법 제 823 조

판결요지

발간기(Impressum)에 언론법상의 책임편집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로써 바로 민사법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사상의 책임은 불법행위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문제가 된 기사를 직접, 스스로 작성하지 아니한 편집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게 신문의 문제가 된 부분의 내용 및 그 형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기사가 공표됨으로써 제 3자의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야 할 편집상의 의무가 그에게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사실개요

「Tageszeitung」 (taz) 이라는 신문의 1989. 12. 24.자 33 면에 「베를린문화」라는 난에 영국 음악평론가인 David Rimmer 의 베를린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그 제목은 『검은 가죽점퍼』라고 되어 있었고, 그 기사의 옆에 원고의 동의없이 원고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다.

위 신문의 발행기관에는 언론법상 의미에서의 책임자로서 피고(1) 및 피고(2)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베를린 지방판」에 대한 책임자로서는 피고(2)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즉 위 기사와 함께 원고의 사진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그의 인격권이 모욕적으로 그리고 명예훼손적으로 침해되었으며, 따라서 그에게는 1 만마르크의 위자료청구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다투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피고(1)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기사가 실려 있는 「베를린문화」란에 대하여서는 전혀 무관하고 단지 위 신문의 「전국기사란」에 대하여서만, 언론법상의 책임있는 자로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2)는 위 사진의 선정이나 위 「베를린문화」란의 편집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사의 공표에 관하여 사전에 전혀 아는 바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1 심의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기각하면서 피고(2)에 대하여 「연대채무자로서」 원고에게 3천마르크 및 이에 대한 1989. 2. 3.부터 연 4%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 및 원고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면서 각 당사자들은 그들의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였는 바 피고(1)에 대한 항소를 구두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취하하자 결국 피고(2)에 대한 소송만이 남게되었다.

판결이유

1988. 12. 24.자 신문에 게재된 이 사건기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진이 공표되었다고 해서 이로써 피고(2)에 대하여 원고가 인격권침해로 인한 어떠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위자료청구가 기각되는 이유는, 원고가 피고(2)의 피고로서의 적격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피고(2)가 taz 신문의 발행기관에 위 신문의 베를린판에 대한 언론법상의 의미에 있어서의 책임자로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바로 이 점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민사법상의 책임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위와 같은 기재는 그 기사의 공표에 대한 편집인의 행사법적인 책임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로써 동시에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민사법상의 책임은 불법행위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문제된 기사를 스스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 기사의 공표전에는 그러한 사실도 알고 있지 않았던 편집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서만 그의 민사적인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가 신문의 문제된 부분의 내용 및 편집에 관하여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편집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 기사의 공표에 의하여 제 3자의 보호받고 있는 인격권이 불법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그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특히 BGH NJW 1977, 626ff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2)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이와 같이 필요한 요건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요건사실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원고는 위 발행기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공표가 행해진 taz 신문의 베를린 지방판의 문화란에 대하여는 위 피고(2)가 편집상의 임무로서 위 기사와 함께 그의 사진이 공표되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할 가능성을 위 피고(2)가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2)가 이와 같은 점을 다투면서 증명한 바를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즉 피고(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taz 신문에 있어서의 지방문화란과 정치란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업무분담 및 역시 피고(2)가 구두변론에서 주장한 사항 즉 지방문화란은 따로 이 부분만을 전담하고 있는 책임편집인에 의하여 담당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로부터 피고(2)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원고는 그가 주장한 사실들을 증명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2)가 진술한 바를 원고가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는 것만으로서는 충분치 아니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2)의 주장과 관련하여, 독일민사소송법 제 283 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점에 관한 해명을 할 기회를 줄 필요성도 없다고 당재판부는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고는 위 기간허용의 신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